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62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62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CC상가관리단 (변경 전 명칭: A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박혜원, 최유라

피고, 상고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양희근, 서보익

판결 선고 2020. 10. 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원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7. 2.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그 지분비율 과반수로서 H을 원고의 대표자로 재선출하고, 그때까지 H이 원고의 대표자로 한 소송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 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H이 지금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H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1심 및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H의 원고 대표권한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옥상 통신장비 수익금 관련 주장(상고이유 1-1, 1-2, 1-3)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안테나의 설치장소, 안테나의 전기세 공제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거나, 옥상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피고가 독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외벽 사우나간판 수익금 관련 주장(상고이유 2-1, 2-2, 2-3, 2-4, 2-5, 2-6, 2-7)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합의의 내용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합의서의 해석 등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3-1, 3-2)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옥상과 외벽(아파트 부분과 상가 부분을 포함)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소송신탁 및 권리남용 주장(상고이유 4, 5)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송신탁 및 권리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신탁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노태악